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63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김동아·김 윤·김문수

황운하 · 김교흥 · 차지호

이정문 · 황명선 · 박정현

박균택 • 허성무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 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2일"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3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	
가 <u>기간 중 최초 2일</u> . 다만,	<u>기간</u>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